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84
----------	-------

발의연월일 : 2023. 8. 30.

발 의 자 : 한병도 · 김수홍 · 김성주
양정숙 · 신영대 · 임호선
안호영 · 윤준병 · 김윤덕
이원택 · 최강욱 · 윤영찬
문진석 · 송재호 · 강병원
이해식 · 한준호 · 김의겸
박용진 · 진선미 · 허영
강성희 · 송기현 의원
(23인)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되면서 지난해 12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은 28개 조항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따라서 전통농업을 기반으로 생명산업 등 첨단과학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생명경제 특화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전

통문화와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 관광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역사적·인문적·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 1)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산업적 특수성 및 위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
- 2)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생명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3)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지구에 한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4)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5)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6)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융지협의체를 두도록 함.

7)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조성된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8) 도지사가 전북자치도에서 생산·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대상으로 J-카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내 특정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및 헬스케어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자치도 내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북자치도의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지사가 정한 지역에 한하여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전북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5)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동물용의약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의 시험·검사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6) 도지사가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수소특화단지 및 그린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2)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일치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분산에너지 규모를 달지 정할 수 있도록 함.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하여 보급사업을 전북자치도에서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4) 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하며, 발전지구 주변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생명서비스산업 육성(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 2)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

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첨단소재 융복합과 모빌리티산업 진흥(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 1) 도지사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2) 도지사가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3)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 대체부품 검사·인증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4) 전북자치도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구역형 유상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5) 도지사가 새만금에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6) 도지사가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특성화된 대학 등 교육기관을 운영·지원하고, 전문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제56조부터 제68조까지)

- 1) 도지사가 케이문화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케이문화융합산업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2) 도지사가 태권도의 교육·산업·관광 등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태권도원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 및 연수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3)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치유관광, 야간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산업 진흥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 5) 도지사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제69조부터 제82조까지)

- 1) 전북자치도 산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2) 산악관광특구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

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3) 도지사가 산악관광특구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4)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 5) 산악관광특구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6) 산악관광특구 개발촉진을 위하여 초지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제85조부터 제98조까지)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경제 분야 혁신을 선도할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2) 전북자치도가 글로벌경쟁력 증진과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전북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3)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학의 학생정

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자.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99조부터 제113조까지)

- 1) 금융위원회가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2) 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을 통한 생명경제 금융산업(연금 및 보험업과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도지사가 전북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핀테크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사항을 심사하는 전북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함.
- 4)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 등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5) 도지사가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함.
-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경제 연구산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새만금사업지역에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차. 의료·복지·안전 체계와 민생경제 활력(제127조부터 제149조까

지)

- 1) 도지사가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성장촉진지역 내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과 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전북자치도에 우선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3) 도지사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 신청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라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공공급식 등에 전북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5) 도지사가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 외 지역을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카.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제150조부터 제163조까지)

- 1) 이 법에서 지정한 지구, 특구, 산업단지 및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세부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2)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관영향협의를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

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3)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타. 자치권 강화(제164조부터 210조까지)

- 1)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원이 증가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2)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는 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3)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 안의 시·군 통합은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기간을 10년으로 함.
- 4)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책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경제”란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이하 “생명경제도시”라 한다)란 생명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북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전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북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북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

치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8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1조(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 국토의 공간구조 및 기능 분담 등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를 독자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국토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독자권역으로서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독자권역으로서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전북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

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전북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제1장 생명산업 육성

제1절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제15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내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이하 “농생명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3.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의 농생명지구의 종류 및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특례) ①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지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지역의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농생명지구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각 특화산업의 집적도, 시너지 효과 및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산업별 특성에 맞게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생명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생명산업의 세부 분야별 농생명지구 지정 계획
3. 농생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4. 농생명산업 진흥과 농생명지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

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농생명산업 진흥과 농생명지구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농생명지구 변경 및 해제) ① 도지사는 정책 및 환경 변화로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농생명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에 한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에 한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스마트농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에 한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공유지만 해당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 및 기업 등 지원
2. 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 지원

3.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산지유통 시설 등 지원
4. 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가공·유통 시설 등 지원
5. 저탄소농산물·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관리 등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 지원

제22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 육성 특례) ① 국가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하여 양봉 신품종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에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에 한하여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제23조(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에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재산을 입주기업 및 관련 기관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이 농생명지구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기간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의 파견근로 유연화 특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파견이 가능한 업무의 종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 따른 농업용지(이하 “새만금 농생명용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새만

금 농생명용지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새만

금 농생명용지의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등

4. 그 밖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관리·처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체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체 위원장은 전북
자치도의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련 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련 국장, 전북자치도의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련 국장

2.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할 시·군의 부단체장

3.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기반시설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

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새만

금개발공사 등의 부사장급 관계자

4.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④ 위촉직 민간전문가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례회
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제27조(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특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제2

항제2호에 따라 조성된 식품전문산업단지는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28조(한우산업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고능력 한우 선발 및 관리를 위한 우량집단 구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생산·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대상으로 J-카우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J-카우 지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③ 도지사는 J-카우에 대한 육종개량 시험연구와 보호·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전북자치도 한우의 개량, 그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⑤ 전북자치도 내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한우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준과 사육규모 등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 제29조(지역특화 라이프 및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내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

는 일부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내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헬스케어특화지구(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특화상품 및 특화서비스 개발 등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화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특화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제4항에 따른 특화지구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라이프 및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특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2. 라이프 및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라이프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창의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4항에 따른 특화지구의 지정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북자치도의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을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전북자치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제1항의 고시 지역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고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4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원격의료 특례) 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의료인과 환자에 관하여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원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2.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가. 지속적 관찰

나. 상담·교육

다. 진단 및 처방

② 제1항의 원격의료 가능 의료취약지역 지정기준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감염병병원 설치 특례) ① 도지사는 감염병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전북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특례) ① 도지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신약 등 혁신형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의 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특례) ① 도지사는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절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제35조(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단지 지정 및 지원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린수소(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 등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이하 “그린수소”라 한다)특화단지를 새만금사업지역 등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그린수소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7조(에너지 생산·소비 일치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례) 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분산에너지와 각 분산에너지사업의 규모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

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 및 계획을 도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따라 달리 제안할 수 있다.

제38조(「신재생에너지법」의 시범사업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의 이용·보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호의 보급사업을 전북자치도 내에서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와 사업투자권한 특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재생에너지의 직접 전력거래 특례)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절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제42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의 정의)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제43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이 절 이하 “복합단지”라 한다)의 입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복합단지

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합단지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복합단지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복합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⑤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시행자에게 복합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복합단지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시설을 포함한다)은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4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
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시설 등의 배치계획
4.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운영계획
5.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운영지원기관(재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채용조달 계획
7.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8. 그 밖에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
요한 사항

③ 국가는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전문연수기관 운영)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
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
으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진흥재단(이하 제46조까지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의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유치·양성·활용에 대한 지원
 4.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 ⑤ 재단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관련 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지원센터: 고령친화 제품 등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고령친화제품 등을 개발하는 센터
 2. 사회서비스산업 인재개발지원센터: 사회서비스 인력을 지원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산업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센터
 3. 그 밖에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 자원관리센터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센터
- ⑥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재단 및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외에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시설 등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실증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전환산업 진흥

제1절 첨단소재 융복합 진흥

제49조(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0조(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개발 시범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호 협의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1조(자동차 배터리 자원순환 특례) ① 도지사는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

항에도 불구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활용하기 위한 제품의 재질·구조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 및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이 채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전자 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절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제52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 대체부품 검사·인증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대체부품 인증의 인증표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본다.

제53조(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형이 아닌 택시 등 구역형 유상 여객운송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4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새만금에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무인이동체 종합실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5조(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특례) ① 도지사는 「철

도산업발전기본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이하 “하이퍼튜브”라 한다) 등 차세대 철도기술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특성화된 대학 등 교육기관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을 위하여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북자치도 내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절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제56조(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한국전통문화에 첨단기술과 현대적인 요소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케이문화융합산업(이하 “케이문화산업”이라 한다)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국제적인 창의활동이 보장되는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진흥지구”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 지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 지구 구성과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 지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는 진흥 지구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케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케이문화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전북자치도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케이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진흥 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지원센터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운영

4. 케이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5. 그밖에 케이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실시

⑤ 지원센터는 전북자치도 산하 문화콘텐츠 진흥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진흥 지구의 지정·해제,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케이문화융합산업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 특례) ① 도지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케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도조례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설립된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케이문화융합콘텐츠의 효율적인 제작과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시행을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케이문화융합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2. 그밖에 케이문화융합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문화유산,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케이문화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설립된 콘텐츠 관련 기관을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케이문화융합 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케이문화융합 분야의 표준화 연구
 3. 케이문화융합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4. 케이문화융합 분야의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기술제휴
 5. 케이문화융합 기술의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연구 주관기관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2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 시행과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8조(케이문화융합산업 관련 기업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케이문화융합의 창작성, 성공가능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케이문화프로젝트와 케이문화사업자를 추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 2제1항에 따른 우수케이문화프로젝트와 우수케이문화사업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케이문화프로젝트와 우수케이문화사업자의 지정에 있어 도지사가 추천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케이문화프로젝트 및 케이문화사업자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에도 불구하고 케이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부설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 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제59조(디지털치유콘텐츠 시범사업 실증 특례) ① 도지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디지털치유콘텐츠 시범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치유콘텐츠 시범사업 추진 및 실증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0조(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스포츠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도지사가 육성·지원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하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태권도특구 지정 및 운영 특례) 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교육·산업·관광 등의 진흥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태권도특구(이하 이 조에서 “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에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할 때는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활성화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태권도원 방문 비자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태권도원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 및 연수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 위임된 사증 발급의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3조(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 교육 등을 위한 치유관광시설의 조성 및 운영

2.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교육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
4.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야간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산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
4. 그 밖에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의 진흥 및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전통무예 체험관광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북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5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한국 해양문화유산의 발굴, 연구, 전시, 교류 등을 진흥하고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에 입주하는 국

내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7조(관광지 등의 처분 특례)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관광진흥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원형지로 공급(매각, 임대, 위탁·경영)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 “실시계획”은 「관광진흥법」의 “구성계획”으로 본다.

제68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절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제69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동부권(전북자치도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

순창 등 6개 시·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동부권”이라 한다) 등의 친환경적인 활용과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이하 “산악관광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자연생태 및 경관이 친환경 산악관광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상지역과 주변 자연환경 여건이 친환경 산악관광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발압력과 환경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민간투자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소멸 대응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5.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6.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7. 산악관광특구에 관한 투자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산악관광자원으로서 가치 및 활용이 우수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이 법 제70조에 따른

산악관광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악관광특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특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 자연생태와 경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악관광특구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산악관광특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⑨ 산악관광특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0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악관광특구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악관광특구의 명칭·위치·면적
2.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산악관광특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 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계획
8. 산악관광특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자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1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의 효과) 산악관광특구가 지정되면 이 법 제70조의 산악관광특구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승인·변경·폐지 및 구역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7.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 기본계획의 변경
 8.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9.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11.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1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등
- 제72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사업시행자(이하 제79조까지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악관광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산악관광특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친환경 산악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4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악관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72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4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악관광사업의 명칭·위치·면적
2. 산악관광사업의 개발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7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5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인·허가 등의 의제) ① 도지사가 제74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지정·결정·신고·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

- 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 계획의 승인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5.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의 허가·신고
1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 채취허가
18.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2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

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76조(친환경 산악관광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7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악관광특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친환경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0조·제12조, 제15조의2제5항, 제18조 제2항·제4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서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악관광특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 및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같은 법 제7조에 대한 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악관광특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전용 허가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산악관광특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 및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제74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을 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국유림(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산악관광특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악관광사업에 대하

여는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준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⑧ 산악관광특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13호에도 불구하고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78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조세·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하천법」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제79조(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80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산악관광특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8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77조제7항 및 제80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3.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제82조(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① 도지사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해제되는 자연휴양림과 별도로 전북자치도에 지역특화 자연휴양림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북자치도 내 지역특화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연

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6조,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에 따라 지정·조성되는 산림복지지구 등과 별도로 전북자치도에 지역특화 산림복지지구 지정·조성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북자치도 내 지역특화 산림복지지구 등에 대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산림복지지구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1절 인구감소 대응 생활인구 확대

제83조(인구감소특별광역지역 지정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인구유입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을 포함하여 전북자치도를 인구감소특별광역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인구감소특별광역지역에 지원·교부할 수 있다.

제84조(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등 귀농어 후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초기 지원 기간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제2절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

제85조(전북과학기술원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경제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6조(국제학교의 설립) ① 전북자치도는 환황해권시대를 선도하는 새만금 지역의 개발과 부흥, 글로벌경쟁력 증진과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국제학교의 설립 자격)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및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88조(국제학교 설립승인) ① 제87조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87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9조(국제학교의 위탁운영 등) ①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87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7조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87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90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국제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

학·전학·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1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유아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제92조(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제87조제1호의 자가 설립한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제87조제1호의 자가 설립한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국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제87조제1호의 자가 설립한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국제학교의 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

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과 해산·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94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로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5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제96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전북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본다.

⑧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전북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7조(외국교육기관의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등을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사용·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 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등을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양여 등을 받은 자가 양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대학 학생정원 조정 특례)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보건의료 정원과 사범계열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학생정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제99조(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전북자치도에 금융중심지가 지정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00조(생명경제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특례) ① 도지사

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생명경제 금융산업(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기 위한 연금 및 보험업과 생명경제도시 형성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을 말한다)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 및 기관
2.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
3. 제1호나 제2호를 투자자로 두고 있는 자산운용사
4. 새만금 및 생명경제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및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전북자치도에 금융중심지가 지정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01조(생명경제 금융교육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금융에 관한 올바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소

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립되는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및 금융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도민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2. 금융지식이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금융교육과 평생교육 측면에서 복잡하게 진화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금융지식 및 실무에 대한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②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안된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전북자치도 소재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2조(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기 위한 연금 및 보험업과 생명경제 도시 형성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과 연계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을 집적할 목적으로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에 입지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이하 “전북핀테크 기업”이라 한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제25조의 사항을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 컨설팅을 하는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전북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북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북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3조(전자적 투자조언장치 활용 특례) ① 도지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북핀테크육성지구에 입지한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심사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센터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설치·운영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북핀테크육성지구에 입지하여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테스트베드센터의 심사를 통과하고 금융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 보유 규모

2.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보유 규모

③ 도지사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제104조(새만금개발 촉진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 내 부동산과 시설 개발에 자산을 투자하여 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그 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 제한, 자산운용제한 및 투자 제한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기업결합신고 대상 회사 또는 상대 회사가 되어 새만금사업지역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자산의 양수를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 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3. 제2호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제105조(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특례)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비율, 지원한도액 등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6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 지방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

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관심 지역”이라 한다) 중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 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7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06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0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지원의 국가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제109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생명경제 연구산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새만금사업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10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특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제111조(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등 특례) ①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의 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 100만㎡ 미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2.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

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산업단지 지정 제한 기준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2조(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특례) 전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 승인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113조(국가 IT창업특구 조성·운영) ① 도지사는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 있는 IT 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국가 IT창업특구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창업특구의 성장과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자치도는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절 글로벌 관문 및 생명경제 거점 조성

제114조(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를 위한 특례) 새만금 지역을 생명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115조(새만금 연결 지방도의 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도로법」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과 연결된 지방도 구간을 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시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제116조(새만금사업지역의 국가예산 공모사업 신청 특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사업지역의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제1장 균등한 정주기반과 생활환경 개선

제117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은 대도시권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로 본다.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운행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118조(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특례) ①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국가지원 지방도의 권한 이양 특례)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0조(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국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전복자치도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1조(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국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를 건설·개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2조(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본다.

제123조(버스 공영제 지원 특례) 국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군에서 노선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4조(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제5항에 따른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외에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방위경보 전파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125조(소음 진동 관리 등 특례) ①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 후단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5항제1호, 제6항, 제24조제2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5조, 제46조제1항·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49조(도조례로 정한 강화된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60조제4항(도 조례로 정한 강화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환경기준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6조(도서관 구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36조(사립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제45조제1항 및 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필수 의료·복지·안전체계 구축

제127조(의료취약지 응급의료 특례)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128조(성장촉진지역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 설립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9조(산재보험 시설 등 설치·운영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산업재해 근로자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전북자치도에 우선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0조(보건·복지 시설 설치·운영 기준 특례) ① 「노인복지법」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아동복지법」 제45조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6항 및 제59조의1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1조(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영유아보육법」 제23

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3,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2조(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특례) 전북자치도의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은 「소방기본법」 제10조제3항을 따르되,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3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4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제3호·제5호의 업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검사관 임명을 위하여 공수의의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제135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제136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례)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7조(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서 학교·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8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41조제1항·제8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

항, 제8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9조(섬발전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소재 섬 지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섬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대상섬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0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

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시험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1조(관리선의 사용과 제한·금지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선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낙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3조(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4조(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북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145조(계약의 방법에 대한 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6조(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특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기업유치, 투자촉진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민간 또는 공공사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47조(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특례)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및 시·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서도 고향사랑 기부금(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모금

· 접수할 수 있다.

②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및 시·군은 법인에 대하여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③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개인별, 법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8조(혁신도시 지정신청) 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할구역 중 혁신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49조(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① 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혁신도시 외 지역을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규정된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적용한다.

제4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제150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과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이념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를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1조(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전북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7.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8.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3조(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같은 법 제8조,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1. 이 법 제15조, 제29조, 제35조, 제39조, 제43조, 제48조, 제56조, 제61조, 제66조, 제69조, 제82조, 제83조, 제106조, 제109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8조, 제139조, 제150조에 따른 지구, 특구, 산업단지, 복합단지 등에서의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제15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경관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협의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자연경관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제15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특례)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157조(수질오염총량관리 등 특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4조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6조에 따른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158조(섬진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 신설 특례)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섬진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159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160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제161조(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특례)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위임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징수비용에 대하여 전북자치도에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62조(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등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 배출부과금을 전북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30
2. 징수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
3. 징수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②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 배출부과금을 전북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부과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30

2. 징수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

3. 징수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제163조(수질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특례)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징수된 개선부담금 전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편 자치권 강화

제1장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제164조(자치조직권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2.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원이 증가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65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6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인건비성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7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8조(특별승급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1호봉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년 전북자치도 근무 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심사와 운영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9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

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0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와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171조(도의회기구 및 정원 등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2.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② 도의회의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72조(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원 및 시·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도의 경우 5급 이하, 시·군
의 경우 6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3조(도의회의원의 정수 특례) ①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도의원의 정수를 산정하고, 「공직
선거법」 제2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이 되도록 전단의 도의원의 정수에 추가하여 정한
다.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도의원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
다.

제174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
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175조에 따른 도의회의
원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175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 특례)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
구의 공정한 확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확정
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제176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2개 이상의 시·군의 통합은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2
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기간을 10년
으로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추가 지원 기간을 20년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7조(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례) ①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에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나 도지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전북자치도는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78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구역 특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폐치분합의 결과

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전북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전북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전북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0조(주민투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1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2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3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4조(해외협력) 전북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할 수 있다.

제185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제186조(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다.

제187조(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독립 설치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3조의2,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은 공립 방송통신중학교와 공립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88조(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중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제189조(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4제1항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채용하여야 한다.

제190조(지방교육 재정 특례)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에 대하여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191조(학교신설 교부금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외에도 교육감이 학생배치계획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립학교 이전, 공립 통합·운영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포함한다.

제192조(정원 책정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책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1.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 책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의 정원 책정
 - 가. 본청의 과장·담당관(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 나.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 다.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제193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졸업한 사람

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4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령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5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전북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한 자치 재정 확보

제197조(지방교부세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시·군 포함)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125를 곱한 금액을 교부한다.

제19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용지매립 및 조성, 제7조에 따른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제200조(지방세 특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7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147조제3항,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 「지방세법」 제19조제4호, 제3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152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1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 특례) 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가중치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100분의 500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20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06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범위 및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3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4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5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에

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전북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06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의 결과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7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08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205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209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9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0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2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6편 보칙

제211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8항에 따라 산악관광특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12조제1항에 따른 인가·승인·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212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3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4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의 위원, 도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편 벌칙

제216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208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217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8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② 제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9조(과태료) ① 제212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94조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제2항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을 말한다)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종전 전라북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서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지방의원, 전라북도 조례 및 전라북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 당시 종전 전라북도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규칙이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유효기간) ① 제108조는 2030년 1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44조는 2025년 9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